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

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 요 내 용

-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9조 제3항제1호).

II. 검 토 의 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최 기 도)